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 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81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구민 참여를 높여,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 조항 일괄 수정(안 제8조).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, 제13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7조, 제78조, 제79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, 선정기준,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필요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개정함.
  -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 등의 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함.
  -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분야 및 우리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.
  - 안 제9조의 2에서는 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’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선행 입법례를 따르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구성의 방법인 공개모집을 기본조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 특성에 맞게 개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부서의견을 제시함.

## ※ 금천구 위원회 현황

### 위원회 수 현황

구 분	2021	2022	2023	2024
위원회 수	109	111	120	126

### 국(소)별 위원회 현황

계	민원감사 담당관	소통 담당관	행정 안전국	기획 경제국	복지 가족국	푸른미래 도시국	문화 환경국	교통 건설국	보건소
126	6	2	30	24	22	14	11	10	7

### 설치 근거별 위원회 현황

구 분	법 령	조 례	기 타	계
			(규칙, 훈령 등)	
위원회 수	66	52	8	126

### 위원구성

총 계	당연직 위원수(명)			위촉직 위원수(명)		
	계	남	여	계	남	여
1,375	426	252	174	949	532	417

- 참고로 서울시 5개 자치구(강서, 구로, 동작, 영등포, 동대문)가 기본조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
**제77조(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
2.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
3.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
**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**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**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**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